

書面答辯書

- 질의 의원 : 표명찬
- 답변공무원 : 공원녹지과장 김후진
- 질의 요지 : 산불진화헬기 임차 산림법등 근거법령 여.부

답변내용

산불진화헬기 임차 근거법령 여.부 서면요구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 합니다

- 산불진화헬기를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차하여야 하는 법적 근거 질문에는 헬기임차 관련 법적 근거는 없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
- 산림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불예방과 진화에 관한 장비의 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산불진화 및 예방을 위하여 칼퀴, 등짐펌프, 방독면등 개인장비들이지 산불진화 헬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차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
- 왜냐하면 산불진화헬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산림청에서 산불진화를 위하여 40여대의 헬기를 보유하고 전국단위로 산불진화 활동에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
- 하지만 우리군이 산불진화헬기의 임차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 많은 헬기를 보유하고 산불발생시 진화작업에 임하고는 있지만 헬기 계류장을 각 지방자치 단체에 설치할 수 없어 대구.경북은 안동시에 계류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
- 따라서 우리군에 산불이 발생하여 헬기를 지원요청 하면 산불진화 현장에 도착하여 진화작업에 임할 수 있는 소요시간이 최소 1시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형산불은 진화 할 수는 있겠지만 초동 진화는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
- 그러므로 우리군은 산불 발생시 신속하게 초동 진화하여 산불을 최소화하는데는 반드시 임차헬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

위와 같이 서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

2001. 12. 13.

공원녹지과장 김 후 진